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금액은 1회 12,000원으로 하고, 매월 최대 8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운용방법,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10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김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84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2일

발 의 의 원 : 김영희 의원

찬 성 의 원 : 장인수,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금액은 1회 12,000원으로 하고, 매월 최대 8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운용방법,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32조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아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치료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아”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을 말한다.
2. “재활치료비”라 함은 각급 재활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전자식바우처시스템”이라 함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지원액을 카드에 기록하여 제공하며 결재와 정산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아로 한다.

1.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날까지 연장 지원 가능)
2. 장애아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제4조(재활치료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활치료비는 일반치료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 및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 지원 : 1회당 12,000원
2. 1인당 지원 : 매월 최대 8회 지원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와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검사자료(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달검사결과서, 진단서, 발달센터의 발달지연소견서 중 한 가지)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및 운용방법) ① 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은 전자식바우처시스템에 따른다.

② 지원된 재활치료비는 매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된다.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대상자 소유의 카드에 입금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장애유형 및 정도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연락처	
	주 소					
신청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 계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치 료 예 정 기 관	①치료기관명(), 치료내용() ②치료기관명(), 치료내용() ③치료기관명(), 치료내용() ④치료기관명(), 치료내용()					
「오산시 중증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 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검사자료(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달검사결과서, 진단서, 발달센터의 발달지연소견서 중 한 가지)					수수료	
					없 음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